

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제17차 금융위원회('26.10.7.) 조치 의결 -

금융위원회(위원장: 이석원)는 10월 7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①(주)금양, ②(주)아센디오·회사관계자와 (주)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(태울회계법인), ③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에 대하여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.

<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>

회사명	대상자	최종 과징금 부과액
(주)금양	회사	7,633.0백만원
	대표이사 등 6인	1,521.9백만원
(주)아센디오	회사	733.7백만원
	前공동관리인 등 3인	157.9백만원
	태울회계법인	80.0백만원
선진회계법인	선진회계법인	22.5백만원

※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'26.9.2일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'26.6.24.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既 의결(붙임 참조)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	책임자	팀 장	류성재 (02-2100-2690)
		담당자	사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		담당자	주무관	윤우진 (02-2100-2698)
<공동>	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	책임자	국 장	이재훈 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 장	최진혁 (02-3145-7723)
	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	책임자	국 장	문정호 (02-3145-7290)
		담당자	팀 장	김지윤 (02-3145-7711)
	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국	책임자	국 장	최창중 (02-3145-7860)
		담당자	팀 장	이두형 (02-3145-7864)

회사명	주요 위반사항	증선위·금융위 조치사항
㈜금양	<회사> ①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 계상 (별도·연결 : '22년 103억원) - 회사는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·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매출 등을 인식함 ②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산정 오류 (별도 : '23년 776.5억원 '24.1분기 776.5억원, '24.2분기 935.5억원 '24년 3분기 172.2억원 연결 : '23년 618.2억원 '24.1분기 710.8억원, '24.2분기 752.5억원 '24년 3분기 732.2억원) - 회사는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 계상함 ③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(별도 : '23년 763.3억원, '24.1분기 763.3억원, '24.2분기 763.3억원 연결 : '23년 741.7억원, '24.1분기 741.7억원, '24.2분기 741.7억원) - 회사는 몽골법인에서 예상되는 영업손익 등이 유의적으로 악화된 징후를 발견하고,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함 ④ 외부감사 방해 - '22년 외부감사시 거래처와 공모하여 허위의 거래증빙을 제시하고, 재고를 회사가 거래하는 창고업체로 옮겨 회사의 재고자산인 것처럼 감사인에게 실사하게 한 후 다시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함 ⑤ 감리시 허위자료 제출 - 감리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인수증 등을 제출하고, 재고는 정상적으로 인도되었으며, 감사인 등의 재고실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함	<회사 및 회사관계자> - 과징금 · 회사 7,633.0백만원 · 대표이사 763.3백만원 · 前재무담당임원 463.8백만원 · 前영업담당임원 39.2백만원 · 공시담당임원 39.2백만원 · 前경영진단임원 39.2백만원 · 내부감사 177.2백만원 - 감사인지정 3년 - 대표이사 외 3인 해임 (면직)권고 및 직무정지 6월 - 前 영업담당임원 외 1인 해임 (면직)권고 상당 - 검찰고발 (회사, 대표이사, 前재무담당 임원) - 검찰통보 (前 영업담당임원 외 2인) - 시정요구

회사명	주요 위반사항	증권위·금융위 조치사항
(주)아센디오	<회사> ①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(별도 '19년 29,488백만원) - 회사는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를 소홀히 하여,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	<회사 및 회사관계자> - 과징금 · 회사 733.7백만원 · 前 공동관리인 73.3백만원 · 前 공동관리인 11.3백만원 · 前 재무담당임원 73.3백만원 - 감사인지정 3년 - 해임(면직)권고 상당 (前 재무담당임원)
	<(주)아센디오의 감사인 태올회계법인('19)> ①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감사절차 소홀(별도 29,488백만원) -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	<태올회계법인> - 과징금 80.0백만원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% - (주)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<소속 공인회계사 1인> - (주)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- 주권상장·지정회사·대형 비상장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- 직무연수 16시간

회사명	주요 위반사항	증권위·금융위 조치사항
선진회계법인	<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> ① 매출 관련 감사절차 부실 - 감사는 (주)◇◇◇◇◇◇의 제24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, 매출 관련 통제테스트 및 세부테스트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함 ②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 부실 - 감사는 (주)◇◇◇◇◇◇의 제24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, 매출원가 관련 통제테스트 및 세부테스트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함	<선진회계법인> - 과징금 22.5백만원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% - (주)◇◇◇◇◇◇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<소속 공인회계사 1인> - (주)◇◇◇◇◇◇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주권상장(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) ·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6시간 <소속 공인회계사 1인> -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2시간